

## 제4절 환경·위생행정

### 1. 환경보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 대기·수질오염에 따른 환경위기의식 고조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제는, 환경보전의 개념도 단순한 공해방지 차원이 아닌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로 수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가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미 훼손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영강·광안리해수욕장 수질개선,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환경보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가. 물 맑은 광안리해수욕장 만들기

광안리해수욕장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 광안대교 설치 등으로 인해 반폐쇄성 수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 해수오염의 주요 원인은 강우 시 바다로 함께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하수 차집 관거의 확충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더불어 해수욕장의 수(水)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기적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02호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의한 [적합] 등급으로 해수욕 및 해양 레저활동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 수질검사 결과

항목	월별 '10.2월	개장 준비기		개 장 기		'10.11월	평 균	등 급
		5월	6월	7월	8월			
COD(mg/ℓ)	0.7	1.0	0.7	1.2	2.0	1.0	1.1	적합
대장균군(MPN/100mℓ)	213	73	15	450	437	8	199	

### 나. 수영강 살리기

우리 구의 최대 하천인 수영강은 하천연장 19.2Km인 하천으로 구 경계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금정, 동래, 연제, 해운대구의 하류지역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석대천, 우동천 및 춘천의 미처리된 도심하수가 수영강으로 유입됨에 따라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내 1개 업소와 연계하여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순찰, 점검하여 무단방류 및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2006년 10월 해운대구 재송동에 동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줄어들고 있고 차집관로의 지속적인 확충도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수영강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다. 2010년 주요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 1사 1하천 정화활동

업 체 명	활 동 구 역	참여인원	주 요 활 동
미광운수(주)	수영1호교 ~ 수영3호교	30명	"

#### 하천 오염도 검사실적

대 상	검사횟수	채 수 지 점	오염도평균(BOD)	검사기관
수 영 강	12회	민 락 교 밑	2.7mg/l	보건환경 연구원

### 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 (1) 지하수 관리

우리 구 관내에서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실태 및 지하수 폐공 시 오염방지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연1회)으로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

[2010.12.31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남천	수영	망미	광안	민락
	340	74	19	58	157	32
음 용	65	17	2	14	28	4
생활용	250	54	17	40	120	19
공업용	11	2		3	4	2
농어업용	14	1		1	5	7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수질검사 현황

[2010.12.31기준, 단위 : 회]

구 분	계	음 용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검사실시	60	39	19	1	1
적 합	60	39	19	1	1
부 적 합	0	-	-	-	-
검사주기		2년 1회	3년 1회	3년 1회	3년 1회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법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처리 및 시설보완 후 재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 약수터 관리

## 약수터 관리 현황

[2010.12.31기준]

지정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1일 평균 이용자수	용출량(이용량) m <sup>3</sup> /일	비 고
1	얼 음 골	망미1동 산114	250명	3.0m <sup>3</sup>	'01.01월 관리지정
2	삼 성	망미1동 산107-1	120명	2.8m <sup>3</sup>	'99.04월 관리지정
3	조 광	광안4동 산35-2	100명	1.4m <sup>3</sup>	'01.12월 관리지정
4	양 지	망미1동 산114	50명	1.0m <sup>3</sup>	'01.01월 관리지정
5	옥 천	광안4동 60-6	30명	1.0m <sup>3</sup>	'05.11월 관리지정
6	구 립 재	광안4동 산35-1	50명	1.5m <sup>3</sup>	'05.11월 관리지정
7	동 굴	광안1동 산19	50명	1.5m <sup>3</sup>	'05.11월 관리지정

최근 “웰빙”붐을 타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수터 이용 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약수터 주변 청소, 정기적 수질검사 및 안내판 정비(검사성적서 부착)등 약수터 관리와 이용 구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에도 식수로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용주민의 주의가 요구되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검사의뢰 기관 및 검사항목

검사기관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채 수 량
보건환경 연 구 원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질소, 증발잔류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하는 전항목은 연1회 2/4분기 실시)	분기별1회(2,5,8,11월), 하절기(7,8,9월) ※ 단, 2/4분기는 47개 전항목 검사	평균통 2ℓ 각 2통
수 영 구 보 건 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평균통 1ℓ 각 1통

라. 연간 검사결과 분석 및 조치사항

2010년 수질검사 결과

관 리 번 호	시 설 명	부적합횟수 (연간)	부적합비율(%)	조 치 사 항
1	얼 음 골	8/10	80	수질검사 결과 및 식수사용중지 안내문 부착
2	삼 성	10/11	90.9	”
3	조 광	10/11	90.9	”
4	양 지	8/11	72.7	”
5	옥 천	5/5	100	”
6	구 립 재	12/12	100	”
7	동 굴	8/10	80	”

위 표의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요 부적합원인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검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야생동물의 분변에 의한 오염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수기(7~9월)에는 빗물의 유입으로 인한 부적합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여시니아균, 암모니

아성질소, 과망간산카륨소비량,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과 보건소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 쉬겔라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

## 2. 환경 배출업소 관리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우리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법에 의한 규제 대상 시설로서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의 규모는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주요 업종으로는 세차, 운수, 자동차 정비 등이고, 2010년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010.12.31기준, 단위:개소]

구분	대상시설(사업장)								
	계	대기	수질	유독물 영업자	토양오염 유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휘발성	기타수질 오염원	실내 공기질
계	258	16	50	5	32	19	22	74	40

#### 대기·수질 배출업소 종별 현황

[2010.12.31기준, 단위:개소]

계	대					기					소음· 진동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66	16	-	-		7	9	50	-	-	-	-	50	-

#### 대기·수질 업종별 현황

[2010.12.31기준, 단위:개소]

계	제조업	정비	세차장	운수업	인쇄업	병·의원	공공기관	시	장	기	타
61	-	24	26	5	-	3	1	-			2

## 나. 대기

1960~7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및 연료사용량의 급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어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농도가 증가되었으나 소득증대, 문화생활 향상 및 이에 따른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연료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2차 대기오염물질인 오존, PAN 등 소위 선진국형 대기오염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구에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등을 시행함으로써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1)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대상업소	점검실적	위반건수	조 치 내 역				
			개선명령	경 고	폐 쇄	고 발	조업정지
16	14	0	-	-	-	-	-

### (2)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

날로 심각해지는 오존오염과 악취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벤젠, 휘발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4개 업종의 배출시설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stageⅡ단계인 유증기회수설비 장치를 설치토록 조치하였으며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

[2010.12.31기준, 단위: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현황			점검실적	
계	주유소	세탁시설	점검업소	위반업소
22	21	1	20	2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며, 매연차량 육안감시를 통한 매연 검사 안내 등 자율적으로 차량 배출가스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적 등

[2010.12.31기준, 단위:건]

무료점검		매연육안감시		점검실적	
점검	초과	감시	과다	점검	계도
194	6	1,423	49	-	-

(4)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는 눈에 보이는 일종의 감각공해로 인간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방지 기술에도 한계가 있어 다른 환경분야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목, 건축,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시행 전에 비산먼지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월1회 비산먼지 저감의 날을 운영하여 공사장 자체적으로 먼지를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심 나대지의 공원화, 학교운동장의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등 생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점검대상	점검실적	위반건수	조		내		역
			경 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고 발	
19	44	4	1	2	1	-	

(5) 오존( O<sub>3</sub> )경보제 시행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 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미의 자극성 기체로 눈·목 따가움, 두통,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식물에도 수확량 감소, 고사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오존에 대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예·경보를 발령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오존경보제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3일간 운영하여 주의보 11회(7일) 발령하였다

예·경보 발령 시 주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민행동요령

구 분	기 준	주 민 행 동 요 령	자 동 차 소 유 자 행 동 요 령
주 의 보	0.12ppm이상	· 실외운동경기참가 권고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권고 · 대중교통시설 이용 권고
경 보	0.3ppm이상	· 실외 신체적활동 제한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억제요청	·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요청
중대경보	0.5ppm이상	· 실외 신체적활동 억제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중지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의 휴교실시	·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당해지역의 차량진입을 억제토록 권고요청

※ 오존 환경기준 : 0.1ppm이하/시간

다. 수 질

우리 구는 강과 바다가 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로 인하여 수영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한편,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적극적인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상설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였으며,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세차업소에 대하여는 세차장내 폐기물·폐유 보관상태, 담벽 및 폐수처리기 도색 상태, 폐타이어 등 적치물 정리정돈 상태에 대한 환경정비를 병행 실시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2010.12.31기준, 단위:개소]

대상업소	점검실적	위반건수	조 치 내 역				
			개선명령	경 고	폐 쇄	고 발	기 타
50	42	-	-	-	-	-	-

라. 소음·진동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구민 욕구증대로 해가 거듭할수록 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구에서도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음의 발생원 측면에서 건설공사장, 이동행사의 확성기, 실외기팬소음 등 다양한 도시 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구에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민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소음관련 민원현황 및 조사처리 현황

[2010.12.31기준, 단위:건]

민원접수건수				규제 기준 초과	처리내용					고발	과태료
계	공장	교통	생활		계	개선 명령	사용 금지	공사 중지	기타		
200	-	1	199	14	200	1	-	-	199	-	12 (4.460천원)

마. 유독물 사용·판매업소 지도점검

관내 유독물 판매 및 운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잠금장치, 기타 안전설비 적정여부,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 비상방재장비 확보·비치여부, 보관창고·저장시설 적정여부 등의 항목을 연 1회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환경개선 부담금

가. 개 요

(1) 목 적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2) 용 도

-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 개발 및 저공해 기술개발비 지원
- 자연환경보전 사업 및 기타 사업 지원 등

나. 현 황

(1)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내지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8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9조

(2)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 과 기 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등 연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납부의무자

- 2010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시설물, 경유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변동 시 소유기간별 산정 부과
- 부과기간 중 철거, 멸실, 사용 중지된 대상물에 대하여는 최종소유자

(5)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도시가스, 남부수도사업소 통보 및 조사에 의한 사용량 부과)
  - 대 기 : 연료사용량×기준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1.854)
  - 수 질 : 용수사용량×기준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1.854)
- 자동차(차량등록원부에 의거 부과)
  - 대당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1.85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구 분	부 과		징 수		비 율
	건 수	금 액(천원)	건 수	금 액(천원)	
시 설 물	4,107	424,433	3,818	404,702	95.3%
자 동 차	31,044	1,703,737	24,379	1,340,618	78.6%

4. 지속 가능한 안전을 위한 선택 「지방의제 21」추진

가. 「지방의제 21」배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9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유엔환경 개

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개최하여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을 채택하였고,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제 21”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동 의제 28장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국가의제 21」 및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채택할 것을 권고하여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작성 실천해 나가도록 되어있다.

### 나. 「지방의제 21」특성

「지방의제 21」이란 21세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의미하며 「지방의제 21」은 이러한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의미한다.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지구환경 보전은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결국 지방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래서 대두된 대표적인 명제가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Plan Regionally Act Locally)”는 것이다.

「지방의제 21」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제 21」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지방의제 21」은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방의제 21」은 계획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위계획이나 지침을 따라야 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가능한 예측 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지방의제 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의제 21」의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이라는 것이다.

「의제 21」은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강령으로서 각 국가와 지방정부는 범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의 「의제 21」을 작성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의제 21」은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역환경 관리계획이란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이다.

반면 「지방의제 21」은 관민 협동으로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 실천해 가는 시민환경개선 행동계획이다.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장래 비전을 제시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을 표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과 기업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 다. 「깨끗하고 푸른 수영 21 추진협의회」운영

우리 구는 2006년 10월 31일 민·관 합동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깨끗하고 푸른 수영 21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협의회 구성 및 2010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향후 「지방의제 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의제작성—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우리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실천사업을 개발·보완하여 실천주체인 지역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계(명)	구의원	교수,교사	장학사	환경전문가	NGO	구 민	당연직
14	-	2	1	2	2	3	4

일 시	장 소	주 요 사 업	세 부 추 진 사 업
2010. 5. 10~14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1일 환경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천초교 등 9개교 3학년 900명</li> <li>· 전문강사 출강, 환경실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 고취</li> </ul>
2010. 7. 2~9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초등학생 환경기초 시설 현장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자연생태 전시관 및 생물 그림뜨기 실내체험</li> <li>· 낙동강하구 탐조대에서 철새도래지 및 숲갈대 자연체험</li> <li>· 습지 및 갯벌의 게, 조개 등 다양한 생물 관찰</li> </ul>
2010. 8. 24 ~25	동해어업지도 사무소	저탄소녹색성장 특강 및 천연비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전문가 강사초빙,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특강</li> </ul>
2010. 9.13~10.8 (시상 11.2)	구청 중회의실	환경보전 실천(체험)사례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 관련 체험담이나 보람을 느꼈던 일들을 표현하는 내용</li> <li>· 생활주변 에너지 절약, 자연보호, 자원 절약 및 재활용</li> <li>· 환경사랑, CO2 줄이기 등</li> </ul>

## 5. 위생관리

유통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소비자·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식량 증산을 위한 농약 등 위해가능 물질의 사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오염 기회 증대, 수입 자유화에 따른 식품수입 증가, 식생활 형태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의 가능성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구에는 광안리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이와 더불어 계절적인 퇴·변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파행적인 영업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시급히 추방하여야 할 당면과제이다.

## 6. 위생업소 현황

우리 구에는 총 26개 업종에 4,719개소의 위생업소가 있고 이중 식품위생 업소는 18개 업종 3,762개소, 공중위생 업소는 8개 업종 957개소이며 업종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식품접객업소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업종별	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타
업소수	2,745	2,129	218	106	157	53	82

공중위생업소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업종별	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처리업			공중이용시설
						세탁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업소수	957	110	77	79	481	148	3	28	31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업종별	업소수	업종별	업소수	업종별	업소수
과자류	5	조미식품	-	젓갈류	1
어육제품	-	식용유지	-	빵또는떡류	4
김치류	2	일반가공식품	5	기타식품류	8

식품판매업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업종별	계	식품소분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백화점등식품판매업	기타
업소수	661	20	295	303	12	3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업종별	계	식육제품	식용유지	어육제품	과자류	두부류	김치절임	기타식품류
업소수	331	33	77	6	57	8	22	128

## 7. 위생업소 지도 점검

안전식품 유통 및 건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불법 영업행위 단속, 문제업소 중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위생업소 건물도색, 간판정비 등 시설물 환경개선, 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위생교육, 업소 위생 점검 및 단속,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이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제조·공정별 점검제를 통한 사후관리와 부적합 업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였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도마, 도시락용기 등을 지원하였고, 과내 사무실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행위 신고전화 1399」 및 위생 접객업소 고충상담실을 따로 두어 담당과장이 직접 면담, 상담하여 업주의 고충을 해소하고 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 가. 취약지역 특별 감시 활동

우리 구 관내 취약지역으로서 특별감시대상 지역은 호객행위가 빈번이 일어나는 민락동 횡촌 일원과 해수욕장 주변 콩나물해장국 업소를 들 수 있다.

민락횡촌 주변의 호객행위는 단속 시에는 잠정 중단하였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성행하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한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특별감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 지속적인 지도·점검, 업소자율 감시원과 합동단속 전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불법 퇴·변태영업 지도 단속

불법 퇴·변태행위를 추방하고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설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불황에 편승한 퇴·변태 불법영업이 음성적으로 재개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합동단속을 실시, 청소년 유해업소근절에 최선을 다하였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

[2010.12.31기준, 단위:개소]

구분 업종별	적발 업소수	적발내용				위반업소조치			
		청소년 출입	무허가 영업	퇴,변태	기타	고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지시
총계	132	4	-	-	103	-	13	53	41
휴게	2	-	-	-	2	-	-	-	2
일반	68	3	-	-	65	-	11	24	33
단란	32	1	-	-	31	-	1	26	5
유흥	5	-	-	-	5	-	1	3	1

다. 무신고(허가) 식품위생업소 강력 단속

무신고(허가)업소의 발생은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와 행정처분으로 허가 취소된 후 업주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 신고절차를 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무단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영업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무허가 업소는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볼 때 과감하게 정비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신규허가에 대한 규제강화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 허가취소 된 경우 단속을 피해 간헐적으로 영업하는 등 생계형 무허가 영업을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장 강제폐쇄 조치는 영세업자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저항이 크고, 때론 업주가 물리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10.12.31기준, 단위:개소]

신원조회	신고유도 및 계시판부착	영업장 폐쇄	재허가 취득	단전 의뢰	단수 의뢰
10	13	19	-	-	-

## 8.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중국산 원료수입제품의 식품사고 급증으로 인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신속한 봉인 및 압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이스크림 등 유통식품, 햄버거·떡볶이 등 유통 조리 판매식품의 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식품의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10.12.31기준, 단위:개소,건]

구	분	계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과대광고 표시	유통단속
감시	업소	383	30	253	35	65
위반	업소	23	8	10	2	3
행정 처분	계	23	8	10	2	3
	영업장 폐쇄	3	1	2	-	-
	영업정지	6	3	2	1	-
	시정지시	7	2	3	-	2
	검찰송치	7	2	3	1	1
수거 검사	검사건수	483	-	-	-	483
	부적합건수	2	-	-	-	2
압류 폐기	건수/금액	-	-	-	-	-

## 9. 위생업소 수준 향상

### 가. 3무 3친 특화거리 조성

음식점의 남은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음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영구청입구에서 수영세무서간 300m에 걸친 음식점 밀집지역에 「3무 3친 특화거리」를 지정하였다. 「3無」란 無 음식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MSG사용·트랜스지방함유 즉,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실천사항을 말하고, 「3親」은 親 환경, 親 인간, 親 건강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의 궁극적인 이념을 말한다. 3무 3친 특화거리내 지정업소는 2009년 31개소에서

2010년 4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3무 3친 표지판 부착, 나눔 접시 및 위생국자, 소변기 탈취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구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10.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지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절차는 영업자가 먼저 금융기관(부산은행)에 융자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선자금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처리기간 7일), 융자결정 통지를 받으면 영업자가 신용보증재단 및 부산은행에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하면 된다. 융자이율은 화장실 개선은 1%, 영업장 개선은 2%이며,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조건으로 2010년의 경우 일반음식점 16개소에서 694,000천원을 지원받았다.